

2023. 11. 30.(목) 10:00

제309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 5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398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6,128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을 출연

6.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7.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연구하고 지역의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역주민 이해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2011년 개원하였으며,
- 지자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지방세제의 개선 및 세수 확충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연구 기관으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6,128천원을 2024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금액	○ <u>출연 예정금액 : 26,128천원(군비 26,128천원)</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2024년도 예산안		
구 분	2023년도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군비100%)	23,938	26,128	26,128	0	2,190

○ 검토 결과, 출연 계획안의 출연금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 출연기관 현황

1.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26,128천원(균비 26,12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2023년도</th> <th colspan="3">2024년도 예산안</th> <th rowspan="2">전년대비 증 감 액</th> </tr> <tr> <th>연구원 요구액</th> <th>부서 산정액</th> <th>증 감</th> </tr> </thead> <tbody> <tr> <td>출연금 (균비100%)</td> <td>23,938</td> <td>26,128</td> <td>26,128</td> <td>0</td> <td>2,190</td> </tr> </tbody> </table>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균비100%)	23,938	26,128	26,128	0	2,190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균비100%)	23,938	26,128	26,128	0	2,190															
필요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치표 등)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①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결산감사 >

- 연초에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과제, 간행물 발간, 지방세 교육 등 주요 사업들이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서 자치단체·행안부 의뢰과제 등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간행물 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홍보분야 실적은 증가했으나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연구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교육은 당초 계획대비 과정과 교육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현장 실무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세목별 부과 징수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됨

< 운영실적 평가 >

- 과제 의뢰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의뢰기관의 신뢰도 상승 및 수요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다만 연구과제 선정시 지방재정 분야 공무원 참여도 필요함
- 적절한 시기의 집합교육 추진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평가 개선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쟁송사건 자문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전문적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네트워크 등 지방세 불복사건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연구사업과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③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결산 지방세	2022년 결산 보통세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217,731,502	217,730,924	26,128	26,128	0	2,190

3.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정규직 71명 (정규직 정원 88명)		71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2, 전문직3, 사무직등20)		14명 (파견 공무원12, 청사관리원2)		
임원 (2023년 8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2023.12.21.		
	부이사장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박일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사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사	이남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사(선임예정)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5.8.29.(예정)		
	감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강현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399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눈꽃마실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
- 주민 화합과 세대간 소통을 장려하고 마을기업 사무실 설치로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

- 사 업 명 :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02, 902-2번지
- 사업기간 : 2023. ~ 2026.(4년간)
- 면 적 : 건축면적 196.38㎡, 연면적 744.12㎡

- 주요시설 : 쉼터 및 마을기업 사무실 등

위치	시설	연면적(m ²)	비고
1층	눈꽃 스토리룸	68.4	마을역사 전시
	마실터 관리실	14.58	-
2층	할아버지 도란터	42.84	-
	할머니 도란터	78.66	-
	공유 부엌	52.92	-
3층	건강돌봄실	101.07	-
	마을기업 사무실	32.67	-
4층	눈꽃 어울마당	131.04	다목적 강당
	집기 보관실	22.68	-

- 총사업비 : 44.79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1.2억원, 군비 11.19억원)
 · 부지매입비 7.04억, 조성공사비 33.58억, 설계감리비 0.92억,
 부대비 2.25억, 마을 아카이빙 1억

<p>※ 기준가격(대장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공시지가 × 면적) : 278,935,000원 - 건물(개별주택가격) : 92,200,000원 - 건물 신축(사업비) : 3,727,000,000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비고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3 (4)	1,461	4,098,135	3 (4)	1,461	4,098,135	
	1.매입	토지			1 (2)	341	278,935	1 (2)	341	278,935	
		건물			1 (1)	376	92,200	1 (1)	376	92,200	
	2.교환	토지			-	-	-	-	-	-	
		건물			-	-	-	-	-	-	
	3.기타	토지			-	-	-	-	-	-	
건물				1 (1)	744	3,727,000	1 (1)	744	3,727,000	신축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종 류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토지)	전	전	회원읍	설화리	902	276	276	225,765,000	2023.11.	눈꽃마실터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3731-01155	설화동 번영회	
	대	대	회원읍	설화리	902-2	65	65				53,17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3731-01155	
2 (건물)			회원읍	설화리	902	376.2	376.2	92,200,000 (개별주택가격)	2023.11.	눈꽃마실터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3731-01155	설화동 번영회	
3 (건물)			회원읍	설화리	902	744.12	744.12	3,727,000,000 (사업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3731-01155	설화동 번영회	

위 치 도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02, 902-2번지



현 장 사 진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 조성(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02, 902-2번지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7.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화원읍 설화리 902번지 일원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눈꽃마실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원읍 설화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설화리 마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건축된 지 40여 년이 지나 구조 안전성 문제 등 개선이 요구되는 마을의 유일한 커뮤니티공간인 마을회관과 그 부지를 매입하여 눈꽃마실터 신축으로 설화리 마을 문화자산을 매개로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 주요시설은 마을행사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모여 먹거리, 마실거리를 나눌 수 있는 공유부엌과 쉼터, 마을기업 사무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	시설	연면적(㎡)	비고
주요시설	1층	눈꽃 스토리룸	68.4	마을역사 전시
		마실터 관리실	14.58	-
	2층	할아버지 도란터	42.84	-
		할머니 도란터	78.66	-
		공유 부엌	52.92	-
	3층	건강돌봄실	101.07	-
		마을기업 사무실	32.67	-
	4층	눈꽃 어울마당	131.04	다목적 강당
		집기 보관실	22.68	-

- 마을의 어르신과 젊은세대와의 소통을 고려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추진 예정인 마을기업 사무실 설치로 생활·문화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 9.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400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화원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공간 건립

- 화원초등학교 일대는 화원전통시장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 화원초등학교 내 부지에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중엔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그 외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논공 남1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논공읍 남1리는 노후 주거지역 및 소규모 공단이 밀집해 있으나 주정차 차량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초래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함

○ 화원 천내1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화원읍 천내1리의 주정차 차량 수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함
-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긴급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함

○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 노인복지관의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지고 관련 민원이 발생함
- 인근 부지를 매입, 부설주차장을 조성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부지 매입

- 달성군 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사업도 확대되었으나, 임대 사업장 공간이 협소하여 수요 대응이 어려움
- 이에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화원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공간 건립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17(현 화원초등학교)
- 기 간 : 2023. 6. ~ 2025. 3.
- 규 모 : 부지면적 3,000㎡, 건축연면적 1,100㎡, 건물 2동(지상1층)
- 주요시설 : 공중화장실, 다목적체육시설(풋살장), 도심공원
- 총사업비 : 22억 원(국비 5.5억, 군비 16.5억)
※ 공사비 19.6억, 설계·감리비 1.62억, 기타 0.78억

※기준가격(사업비)

-건물(사업비) : 2,200,000,000원

○ 논공 남1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 치 : 논공읍 남리 577-36, 577-38, 577-71번지
- 기 간 : 2024. 1. ~ 2024. 12.
- 규 모 : 부지면적 1,692㎡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45면 정도)
- 총사업비 : 30억 원 정도 (군비 30억 원)
· 부지매입비 26.8억 원, 공사비 3.2억 원 정도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217,035,200원

○ 화원 천내1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위치 : 화원읍 천내리 443번지
- 기간 : 2024. 1. ~ 2024. 12.
- 규모 : 부지면적 726㎡
- 주요시설 : 공용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22면 정도)
- 총사업비 : 31억 원 정도 (균비 31억 원)
 - 부지매입비 28.1억 원, 공사비 2.9억 원 정도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093,356,000원

○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 위치 : 달성군 매곡리 905 외 6필지
- 기간 : 2024. 4. ~ 2024. 12.
- 규모 : 부지면적 3,444㎡
- 주요시설 : 부설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110면 정도)

구분	너비	길이	비고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105면
장애인, 임산부 전용	3.3m 이상	5.0m 이상	5면

- 총사업비 : 26억 원 정도(균비)
 - 부지매입비 15억, 설계비 0.6억, 공사비 10억, 용역비 0.1억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965,154,400원

○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부지 매입

- 위치 : 현풍읍 원교리 583-1 일원
- 기간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 규모 : 부지면적 5,432㎡
- 주요 시설 : 농기계 보관 및 임대 창고, 사무실, 세척장 등
- 사업비 : 부지매입비 27.5억 원 (균비)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139,655,800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비고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5 (13/2)	10,732	6,294,043	5 (13/2)	10,732	6,294,043		
	1.매입	토지			4 (13)	9,632	4,094,043	4 (13)	9,632	4,094,043	매입	
		건물			-	-	-	-	-	-		
	2.교환	토지			-	-	-	-	-	-		
		건물			-	-	-	-	-	-		
	3.기타	토지			-	-	-	-	-	-		
건물				1 (2)	1,100	2,200,000	1 (2)	1,100	2,200,000	신축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종 류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회원읍	천내리	417	21,859	1,100	2,200,000,000	2024.7.	회원초등학교 학교복합화 공간 건립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 교육감	신축 (2동)
2 (토지)	대	대	논공읍	남리	577-36	912	912	599,275,200	2024.3.	논공남1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22길 15, 4층	김**	매입
	대	대	논공읍	남리	577-38	697	697	552,024,000	2024.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2길9, 101동 604호	박**	
	대	대	논공읍	남리	577-71	83	83	65,736,000	2024.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2길9, 101동 604호	박**	
3 (토지)	대	대	회원읍	천내리	443	726	726	1,093,356,000	2024.3.	회원천내1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도의길 86	손**	

종 류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4 (토지)	전	전	다사읍	매곡리	905	1,031	1,031	174,032,800	2024.6.	달성군북부 노인복지관 주차장조성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0-1	김**	매입
	대	대	다사읍	매곡리	906	281	281	152,807,800	2024.6.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0-1	김**	
	대	대	다사읍	매곡리	907	452	452	314,772,800	2024.6.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0-1	김**	
	도로	도로	다사읍	매곡리	908-7	6	6	102,600	2024.6.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0-1	김**	
	전	전	다사읍	매곡리	908-8	12	12	2,280,000	2024.6.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0-1	김**	

※ 사업대상지 중 다사읍 매곡리 919-1(714㎡), 919-2(948㎡)는 공유지
재산관리관 변경 예정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종 류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 (토지)	답	답	현풍읍	원교리	583-1	2,363	2,363	494,812,200	2024.3.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이전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6길 2-22(201호)	김**	매입
	답	답	현풍읍	원교리	583-3	2,965	2,965	620,871,000	2024.3.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37(206/601)	곽**	
											유가읍 금동 906	이**	
	답	답	현풍읍	원교리	584	1,848	54	11,307,600	2024.3.		현풍읍 원교리 1586	이**	매입 (도로 확장)
	답	답	현풍읍	원교리	585-1	1,344	50	12,665,000	2024.3.		현풍읍 비슬로64길 87	이**	

위 치 도

【화원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공간 건립(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17번지



조 감 도

【화원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공간 건립(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17번지



현 장 사 진

【논공 남1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577-36, 577-38, 577-71



현 장 사 진

【화원 천내1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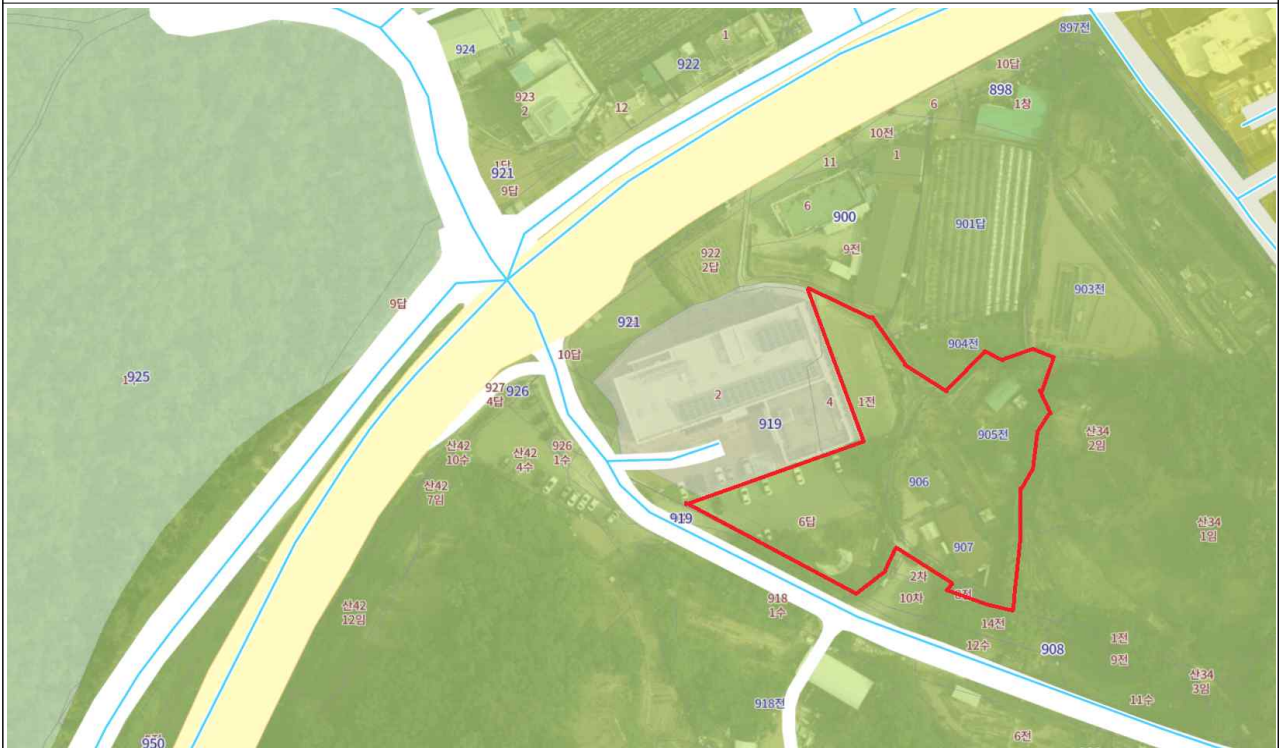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43번지



위 치 도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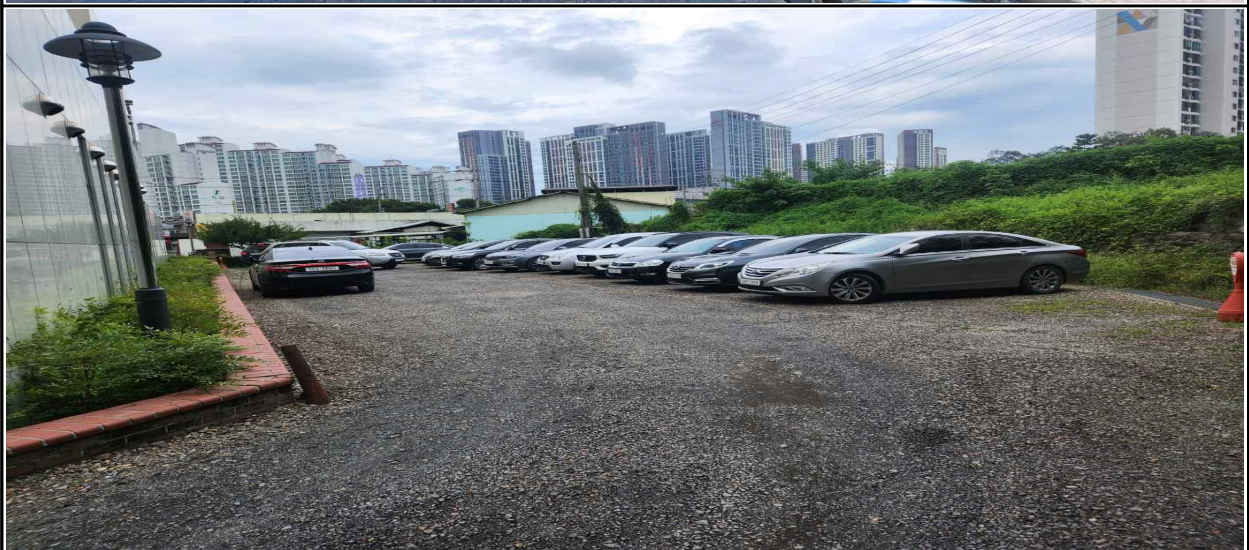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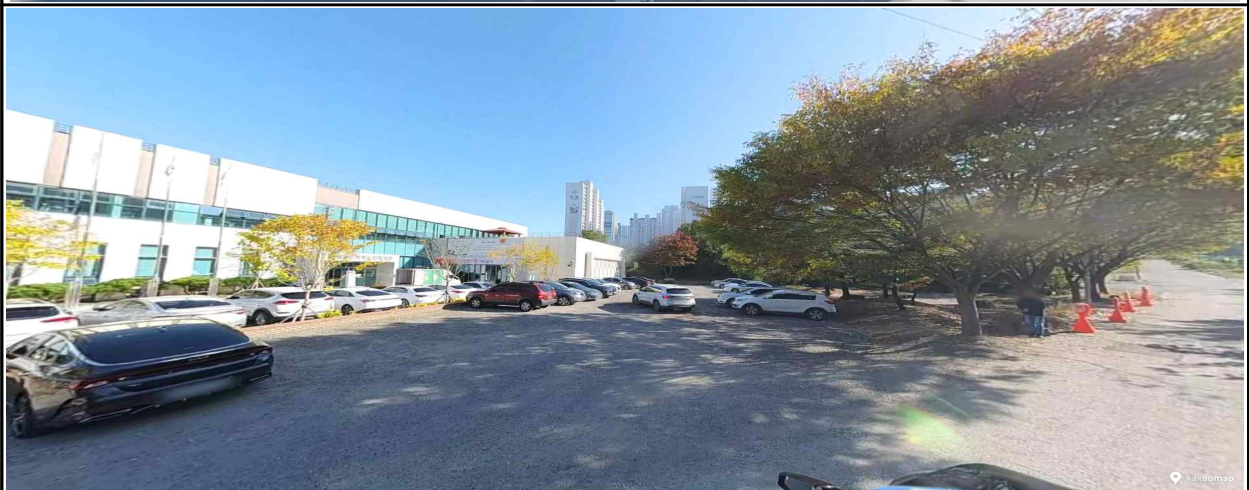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05번지 일원



현 장 사 진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05번지 일원



현 장 사 진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부지 매입(안)】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583-1번지 일원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7.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화원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공간 건립**
 - 화원초등학교 일대는 화원전통시장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 대비 부족한 편의시설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3년 9월,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화원초가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국비 5.5억 원, 군비 16.5억 원입니다.
 - 화원초등학교 남측 부지 3,000㎡를 풋살장, 공중화장실, 도심공원을 조성하여 주중엔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그 외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논공 남1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논공 남1리에 노후 주거지역 및 소규모 공단이 밀집하여 주정차 차량 수 대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논공 남리 577-36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1,692㎡를 활용해 45면 정도의 주차면수 확보로 마을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마을에 공동주차장을 추가 마련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화원 천내1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 화원 천내1리의 주정차 차량 수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화원읍 천내리 443번지, 부지면적 726㎡를 활용하여 22면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해 마을의 공동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긴급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 달성군 내 노인인구는 2021년 기준 33,089명으로 2011년 대비 182%, 2001년 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내 노인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의 회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지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매곡리 905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3,444㎡를 매입 후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을 포함 110면 정도를 조성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 및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남부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부지 매입

- 관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사업도 확대되었으나, 임대 사업장 공간이 협소하여 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풍읍 원교리 583-1번지 일원, 부지면적 5,432㎡를 매입 후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장 이전하여 임대사업 수요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임대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 이용 불편 해소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 9.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삭제)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제10조(교육경비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3(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 100분의 1이상

② 시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임대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402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코로나19의 여파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4. 2. ~ 자금 소진 시
- 출연금액 : 10억 원(출연 시 보증 규모 100억 원)
- 내 용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나. 그간 추진경과

- 보증규모 : 130억 원(신용보증재단 전액보증)
- 접수기간
 - (1차) 2023. 5. 24. ~ 8. 3.
 - (2차) 2023. 9. 25. ~ 접수진행 중
- 보증내역

(10. 20. 기준)

구 분	보 증 실 행			비 고
	대상(보증규모)	건 수	금 액	
특례보증(Ⅰ)	일 반(99억)	409건	9,767.5백만 원	1~7등급
	저 신 용(1억)	12건	60백만 원	6~9등급
특례보증(Ⅱ)	고 신 용(9억)	23건	580백만 원	1~2등급
	중·저신용(21억)	14건	284백만 원	3~7등급

다.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4. 1.
- 달성군,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3자협약 체결 : 2024. 1.
- 사업시행 : 2024. 2. ~ 자금 소진 시

6.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신용보증재단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7. 검토의견

- 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통해 원활한 자금유통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출연과 관련하여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정부, 금융기관 및 연고기업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소상공인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1996년 설립되어 대구 내 소재하는 담보력은 미약 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구신용보증재단은 435,685백만원의 기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기준, 46,689건의 보증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번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달성군,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억 원에 대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계획 중입니다.
-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적은 13억 원을 출연하여 2023년 5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0월 20일 기준 458개 업체에 10,691백만 원의 금융지원을 하였습니다.

(10. 20. 기준)

구 분	보 증 실 행			비 고
	대상(보증규모)	건 수	금 액	
특례보증(Ⅰ)	일 반(99억)	409건	9,767.5백만 원	1~7등급
	저 신 용(1억)	12건	60백만 원	6~9등급
특례보증(Ⅱ)	고 신 용(9억)	23건	580백만 원	1~2등급
	중.저신용(21억)	14건	284백만 원	3~7등급

- 2022년 1월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3.5%로 급등하였고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관 명 : 대구신용보증재단 ○ 대 표 : 황 병 옥 ○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출 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1,000백만 원(균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단위:백만원)</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사업기간</th> <th style="width: 15%;">예산액</th> <th style="width: 15%;">2024 요구액</th> <th style="width: 15%;">2023 요구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재산</td> <td style="text-align: center;">2월 ~ 자금소진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출연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원으로 조성</p>	구 분	사업기간	예산액	2024 요구액	2023 요구액	합 계	-	1,000	1,000	1,300	기본재산	2월 ~ 자금소진시	1,000	1,000	1,300
구 분	사업기간	예산액	2024 요구액	2023 요구액												
합 계	-	1,000	1,000	1,300												
기본재산	2월 ~ 자금소진시	1,000	1,000	1,300												
출 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유통 지원 필요 															
근 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 업 부 서 의 견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자금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00백만 원의 출연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대구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 053-560-6300							
			홈페이지 : www.ttg.co.kr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시행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조례 :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자	○ 설립일자 : 1996. 11. 7.									
조직인력	○ 2본부 3부 7영업점 2실 1센터 / 99명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 소기업·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 구상권의 행사 ○ 기본재산 관리 ○ 국가,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보증현황 (건, 백만원)	총보증공급(누적, '23.8.31.)		보증잔액('23.8.31.)		2023년 보증공급('23.8.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0,643	14,446,211	126,517	2,294,807	46,689	1,179,235				
기본재산 (백만원)	총 기본재산 ('23.8.31)	설립당시 기본재산				증감 기본재산				자치단체출연 기본재산 (기초포함)
		소계	시	정부	기타	소계	시	구군청	정부	
	435,685	51,427	25,000	10,500	15,927	384,257	139,543	5,280	74,002	165,433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22.12.31.)			부채('22.12.31.)			자본('22.12.31.)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25,810	223,063	102,747	73,902	35,499	38,403	251,908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14.]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전문개정 2011. 4. 14.]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⑤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403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 2024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 : 금2,089백만 원
 - (재)달성교육재단 운영비 : 814백만 원
 -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438백만 원, 기본운영비 322백만 원 등
 - (재)달성교육재단 사업비 : 1,275백만 원
 - 사업대상자 확대 및 새로운 프로그램 추가로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
 - 진로진학사업 : 136백만 원, 글로벌 교육지원 1,136백만 원 등

6.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7. 검토의견

- 본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024년 출연금은 2,089백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2,391백만원 보다 302백만원 감액되었고, 전체 출연금 중 재단운영비로 814백만원을 편성하고 진로진학 및 영어학습 지원 등 사업비에 1,27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장학금 및 각종 신규사업은 재단 자체 이자 수입 91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학군을 이유로 관내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단순 장학사업만을 담당하던 달성장학재단을 입시 등 교육 지원사업을 더해 달성교육재단으로 전환 출범하여 첫발을 내딛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관 명 : (재)달성교육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출 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2,089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예산액</th> <th style="width: 20%;">2024 요구액</th> <th style="width: 20%;">2023 출연액(최종)</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113</td> <td style="text-align: right;">2,089</td> <td style="text-align: right;">2,391</td> </tr> <tr> <td>인력운영비</td> <td style="text-align: right;">438</td> <td style="text-align: right;">438</td> <td style="text-align: right;">141</td> </tr> <tr> <td>기본운영비</td> <td style="text-align: right;">530</td> <td style="text-align: right;">322</td> <td style="text-align: right;">268</td> </tr> <tr> <td>자본적 경비</td> <td style="text-align: right;">1,127</td> <td style="text-align: right;">54</td> <td style="text-align: right;">327</td> </tr> <tr> <td>장학사업</td> <td style="text-align: right;">586</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진로진학사업</td> <td style="text-align: right;">136</td> <td style="text-align: right;">136</td> <td style="text-align: right;">71</td> </tr> <tr> <td>학생 건강증진 사업</td> <td style="text-align: right;">48</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달성 바로알기 지원사업</td> <td style="text-align: right;">107</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차산업 등 교육지원사업</td> <td style="text-align: right;">176</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교육협력 네트워크 조성</td> <td style="text-align: right;">3</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글로벌 교육지원</td> <td style="text-align: right;">2,400</td> <td style="text-align: right;">1,136</td> <td style="text-align: right;">1,564</td> </tr> <tr> <td>평생학습도시 조성</td> <td style="text-align: right;">3</td> <td style="text-align: right;">3</td> <td style="text-align: right;">20</td> </tr> <tr> <td>군립·남부도서관 운영</td> <td style="text-align: right;">2,559</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 군립·남부도서관 운영비(2,559백만원)는 위탁사업비로 별도 교부</p>	구 분	예산액	2024 요구액	2023 출연액(최종)	합 계	8,113	2,089	2,391	인력운영비	438	438	141	기본운영비	530	322	268	자본적 경비	1,127	54	327	장학사업	586	-	-	진로진학사업	136	136	71	학생 건강증진 사업	48	-	-	달성 바로알기 지원사업	107	-	-	4차산업 등 교육지원사업	176	-	-	교육협력 네트워크 조성	3	-	-	글로벌 교육지원	2,400	1,136	1,564	평생학습도시 조성	3	3	20	군립·남부도서관 운영	2,559	-	-
구 분	예산액	2024 요구액	2023 출연액(최종)																																																						
합 계	8,113	2,089	2,391																																																						
인력운영비	438	438	141																																																						
기본운영비	530	322	268																																																						
자본적 경비	1,127	54	327																																																						
장학사업	586	-	-																																																						
진로진학사업	136	136	71																																																						
학생 건강증진 사업	48	-	-																																																						
달성 바로알기 지원사업	107	-	-																																																						
4차산업 등 교육지원사업	176	-	-																																																						
교육협력 네트워크 조성	3	-	-																																																						
글로벌 교육지원	2,400	1,136	1,564																																																						
평생학습도시 조성	3	3	20																																																						
군립·남부도서관 운영	2,559	-	-																																																						
출 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달성교육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교육경쟁력 강화 																																																								
근 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2조 																																																								
사 업 부 서 의 견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정8기 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구성에 중요한 역할 ○ 군민 수요 맞춤형 교육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 필요 ○ 지역사회 연계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 확대 가능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4년 출연금 2,089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814백만 원
 - 진로진학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비 1,275백만 원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본예산(안)			2023년 출연액 (A)	증감액 (B-A)
	재단 예산액	재단 요구액	부서 검토액 (B)		
총 계	9,312	3,189	2,089	2,391	△302
재단운영비	2,096	814	814	736	
인력운영비	438	438	438	141	297
기본운영비	531	322	322	283	39
자본적 경비	1,127	54	54	312	△258
자체사업비	4,559	2,375	1,275	1,655	
진로진학 지원	136	136	136	71	65
글로벌 교육지원	3,500	2,236	1,136	1,564	△428
평생학습도시 조성	3	3	3	20	△17
장학금 지원	586	-	-	-	-
학생 건강증진 지원	48	-	-	-	-
달성 바로알기 지원	107	-	-	-	-
4차산업 등 교육지원	176	-	-	-	-
교육협력 네트워크 조성	3	-	-	-	-
위탁사업비	2,657	-	2,559	-	-
군립·남부도서관 운영	2,657	-	2,559	-	-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재)달성교육재단				전화번호	053.644.9683	
					홈페이지	www.dsjanghak.or.kr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요연혁	2000. 4. 4. 등기						
임원(17) (23.8.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이희갑	前 대구미래교육원 원장			2023.8.1.~2027.7.31	
	비상임이사	나상권	달성군 교육복지국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송정근	농협달성군지부 지부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이대현	하빈면 체육회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읍번영회장			2023.7.10~2027.7.9	
	비상임이사	조성래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홍진웅	회원새마을금고 이사장			2021.1.1~2024.12.31	
	비상임이사	최상국	前 달성군의회 의원			2023.8.1~2024.12.31	
	비상임이사	심경용	前 대구학생문화센터 관장			2023.8.1~2024.12.31	
	비상임이사	백운태	구지면 장학회 이사			2023.8.1~2024.12.31	
	비상임이사	김우식	달성군 체육회 이사			2023.8.1~2024.12.31	
	비상임이사	이진규	달성군 체육회 이사			2023.8.1~2027.7.31	
	감사	김대근	세무법인 양정 세무사			2023.8.1~2025.7.31	
감사	윤종민	달성군 회계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달성군 교육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 ○ 각종 교육지원 사업 수행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12.31. 기준	기본 재산	31,404
	예산액	4,070	4,499	5,038		보통 재산	562
	지자체 지원액	3,260	3,512	2,391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의 출연금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4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404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2024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6억 8,500만 원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52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

6. 관계법령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검토의견

- (재)달성복지재단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출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으며,
- 본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024년 출연금은 685백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640백만원 보다 4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495백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45백만원, 사업비 4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출연금이 증액된 부분이 사업비 부분인 만큼 재단의 재정안정을 통한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52개 시설을 수탁하여 군민들의 복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서비스의 지속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을 출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대 표 : 강성환(비영리 공익법인, 2008. 10. 15. 설립)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 기본재산 : 21억원(달성군 출연금, 이월금) -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 노인복지관,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52개 수탁시설 · 모금사업: 기부 및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 · 배분사업: 지정·결연 후원, 저소득 가정 지원, 후원물품 등 · 기획사업: 홀로어르신 명절나기,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지원 등 																																																		
출 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 금액: 6억 8,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6억 8,500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단위: 백만 원)</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3년 요구액</th> <th rowspan="2">2024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 원 별</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인 건 비</td> <td>2024.1.1. ~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5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95</td> <td style="text-align: center;">49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49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기본경비</td> <td>2024.1.1. ~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98</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사 업 비</td> <td>2024.1.1. ~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예 비 비</td> <td>2024.1.1. ~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요구액	2024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 건 비	2024.1.1. ~12.31.	540	495	495	-	-	495	-	기본경비	2024.1.1. ~12.31.	98	145	145	-	-	145	-	사 업 비	2024.1.1. ~12.31.	0	45	45	-	-	45	-	예 비 비	2024.1.1. ~12.31.	2	0	0	-	-	0	-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요구액	2024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 건 비	2024.1.1. ~12.31.	540	495	495	-	-	495	-																																											
기본경비	2024.1.1. ~12.31.	98	145	145	-	-	145	-																																											
사 업 비	2024.1.1. ~12.31.	0	45	45	-	-	45	-																																											
예 비 비	2024.1.1. ~12.31.	2	0	0	-	-	0	-																																											
출 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재정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출연금 교부) 																																																		

<p>사업부서의 견 (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군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음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52개 수탁시설 복지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복지정책과 부서 의견은 달성복지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한 군 출연금 6억8,500만원 교부는 타당하다고 판단함.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의견

- 2024년 출연금 6억 8,500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2024년도 이월금(자부담) 예산 감소
 -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직무수행경비 반영
 - 사업비 출연금 예산 일부 반영 편성

2.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최종) (A)	2024년 예산(안)			
			기 관 요구액(B)	부 서 검토액(C)	증 감 (C-B)	전년대비 증감액(C-A)
총 계	676	640	685	685	0	45
인 건 비	397	540	495	495	0	▲45
기본경비	201	98	145	145	0	47
행사홍보비	3	0	4	4	0	4
교육훈련비	22	0	41	41	0	41
수탁시설전출금	53	0	0	0	0	0
예 비 비	0	2	0	0	0	▲2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전화번호	053-617-9200	
					홈페이지	www.dswelfare.kr	
설립근거	법률 : 민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8. 10. 15.						
임 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대표이사 (비상임)	강성환	- 前 달성군 환경과 과장			2023. 1. 18.~2025. 1. 17.	
	상임이사	김외식	- 現 달성군 교육복지국 국장			2023. 1. 18.~2025. 1. 17.	
	비상임이사	구명숙	- 前 달성노인복지센터 대표			2023. 1. 18.~2025. 1. 17.	
	비상임이사	윤영현	- 現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2023. 1. 18.~2025. 1. 17.	
	비상임이사	이장희	- 前 이성철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2023. 1. 18.~2025. 1. 17.	
	비상임이사	이학도	- 現 성화종합건설(주) 이사			2023. 1. 18.~2025. 1. 17.	
	비상임이사	임규태	- 現 다사농협 사외이사			2023. 1. 18.~2025. 1. 17.	
	비상임이사	전옥수	- 現 엠허브의원 총무 이사			2023. 1. 18.~2025. 1. 17.	
	비상임이사	정우선	- 前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			2023. 1. 18.~2025. 1. 17.	
	비상임이사	차한용	- 前 달성군 공무원 (현풍면장)			2023. 1. 18.~2025. 1. 17.	
	비상임감사	서연희	- 現 세무사			2023. 1. 18.~2025. 1. 17.	
	비상임감사	장명진	- 前 상인복지관 관장			2023. 1. 18.~2025. 1. 17.	
주요기능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사업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 12. 31. 기준)	자산	3,219백만원
	예산액	1,474 백만원	1,680 백만원	1,574 백만원		부채	5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676 백만원	622 백만원	640 백만원		자본	3,214백만원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24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번호: 제2405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2024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 주요내용

- 달성문화재단 출연 : 금3,212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1,357백만 원
 -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금1,855백만 원
 - 달성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6.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7. 검토의견

- 본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와 지역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달성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단 운영·관리비,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달성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에 출범하였습니다.

- 2024년 출연금은 3,212백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3,868백만원 대비 17% 가량(656백만원) 감액되었고, 전체 출연금의 약 26% (836백만원)가 인건비로 편성되어있으며 2023년 대비 5% (4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민선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번, 2024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문화교차로, YES! 키즈존 등 문화예술행사의 다양화를 통해 문화관광도시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관 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7~8층 																																																																																																																																												
출 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3,212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 분</th> <th rowspan="2" style="width: 10%;">사업 기간</th> <th rowspan="2" style="width: 10%;">2023 예산액 <최종></th> <th rowspan="2" style="width: 10%;">2024 요구액</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재 원 별</th> </tr> <tr> <th style="width: 10%;">계</th> <th style="width: 10%;">국비</th> <th style="width: 10%;">사비</th> <th style="width: 10%;">군비</th> <th style="width: 10%;">기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868</td> <td style="text-align: center;">3,212</td> <td style="text-align: center;">3,21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21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력운영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794</td> <td style="text-align: center;">836</td> <td style="text-align: center;">836</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836</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경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384</td> <td style="text-align: center;">521</td> <td style="text-align: center;">52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521</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성 100대 피아노</td> <td style="text-align: center;">9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성 대구현대미술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9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7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빈행복생활문화 센터 운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2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5</td> <td style="text-align: center;">12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2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술자치구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성군립합창단 운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성 스토리텔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YES! 키즈존</td> <td style="text-align: center;">5월, 10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290</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기획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달성문화교차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참꽃갤러리 운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3 예산액 <최종>	2024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사비	군비	기타	합 계		3,868	3,212	3,212	-	-	3,212	-	인력운영비	1-12월	794	836	836	-	-	836	-	기본경비	1-12월	384	521	521	-	-	521	-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550	200	200	-	-	200	-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월	730	150	150	-	-	150	-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12월	200	200	200	-	-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 센터 운영	1-12월	125	125	125	-	-	125	-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150	150	-	-	150	-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120	130	130	-	-	130	-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120	120	120	-	-	120	-	YES! 키즈존	5월, 10월	290	350	350	-	-	350	-	문화기획지원	1-12월	180	180	180	-	-	180	-	달성문화교차로	1-12월	200	150	150	-	-	150	-	참꽃갤러리 운영	1-12월	25	100	100	-	-	100	-
구 분	사업 기간					2023 예산액 <최종>	2024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사비	군비			기타																																																																																																																																					
합 계		3,868	3,212	3,212	-	-	3,212	-																																																																																																																																					
인력운영비	1-12월	794	836	836	-	-	836	-																																																																																																																																					
기본경비	1-12월	384	521	521	-	-	521	-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550	200	200	-	-	200	-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월	730	150	150	-	-	150	-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12월	200	200	200	-	-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 센터 운영	1-12월	125	125	125	-	-	125	-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150	150	-	-	150	-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120	130	130	-	-	130	-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120	120	120	-	-	120	-																																																																																																																																					
YES! 키즈존	5월, 10월	290	350	350	-	-	350	-																																																																																																																																					
문화기획지원	1-12월	180	180	180	-	-	180	-																																																																																																																																					
달성문화교차로	1-12월	200	150	150	-	-	150	-																																																																																																																																					
참꽃갤러리 운영	1-12월	25	100	100	-	-	100	-																																																																																																																																					
출 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p>근 거 법 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p>사 업 부 서 의 견 (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3. 3.. ~ '23. 6.)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10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경영관리	58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 경영시스템 • 일자리확대 • 사회적책임
경영성과	42	3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 경영효율성과 • 고객만족
총 점	100	91.10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4년 출연금 3,212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357백만 원

-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자체사업비 1,855백만 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최종> (A)	2024년 예산(안)		
			재단 요구액	부서 검토액 (B)	전년대비 증감액 (B-A)
총 계	3,880	3,868	3,212	3,212	△656
기관운영비	1,278	1,178	1,357	1,357	179
인력운영비	825	794	836	836	42
기본경비	453	384	521	521	137
자체사업비	2,602	2,690	1,855	1,855	△835
달성 100대 피아노	549	550	200	200	△350
달성대구현대미술제	474	730	150	150	△580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170	200	200	200	-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93	125	125	125	-
예술자치구역	142	150	150	150	-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20	120	130	130	10
달성 스토리텔링	195	120	120	120	-
달성음악회	237	-	-	-	-
달성고유물 수집사업	25	-	-	-	-
문화기획지원	106	180	180	180	-
문화도시예비사업	491	-	-	-	-
YES! 키즈존	-	290	350	350	60
달성문화교차로	-	200	150	150	△50
참꽃갤러리 운영	-	25	100	100	75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68-4234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 5. 17. 등기						
임원 (23.10.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방성택	대구음악협회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정대용	경산시립예술단 단무장			2022.8.23.~2024.8.22	
	비상임이사	서재혁	달성군 문화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환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2.8.23.~2024.8.22	
	감사	윤태영	달성군 문화예술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12.31 기준 (백만원)	자산	8,706
	예산액	7,020	7,070	8,083		부채	1,412
	지자체 지원액	4,782	4,553	5,704		자본	7,294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 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4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의안번호: 제2396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5.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 세입예산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 저조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되나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잉여금 발생 최소화, 지방세 체납징수 노력 강화를 통해 가능한 세입추계를 최대한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전쟁,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리스크에 따른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였으나,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창업 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최대한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SOC 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함.

6. 예산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총 계	872,788	100.00	
일 반 회 계	872,000	99.91	
특 별 회 계	788	0.09	
기 타 특 별 회 계	788	0.0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7	0.01	
의 료 급 여 기 금	711	0.08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872,788	880,000	△7,211	△0.82
일반회계	합 계	872,000	878,600	△6,600	△0.75
	지방세 수입	220,793	218,321	2,472	1.13
	세외수입	40,759	38,867	1,892	4.87
	경상적 세외수입	25,569	25,106	463	1.85
	임시적 세외수입	8,828	7,392	1,436	19.4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362	6,369	△7	△0.12
	지방교부세	149,500	168,575	△19,075	△11.32
	조정교부금 등	30,000	31,014	△1,014	△3.27
	보조금	414,395	417,309	△2,913	△0.70
	국고보조금 등	290,831	273,321	17,510	6.41
	시·도비보조금 등	123,565	143,988	△20,423	△14.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552	4,515	12,037	266.61
특별회계	합 계	788	1,400	△612	△43.71
	세외수입	31	190	△159	△83.53
	경상적세외수입	2	2	△0	△1.03
	임시적세외수입	29	188	△159	△84.46
	보조금	711	598	113	18.93
	국고보조금 등	584	478	106	22.16
	시·도비보조금 등	127	120	7	6.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	612	△566	△92.56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72,788	880,000	△7,211	△0.82
일반회계	계	872,000	878,600	△6,600	△0.75
	일반공공행정	45,748	52,711	△6,963	△13.21
	공공질서및안전	6,670	6,131	539	8.80
	교육	13,726	12,973	753	5.80
	문화 및 관광	43,754	43,463	291	0.67
	환경	27,464	28,267	△803	△2.84
	사회복지	413,516	387,740	25,776	6.65
	보건	27,483	26,035	1,448	5.56
	농림해양수산	55,022	57,835	△2,813	△4.8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543	2,901	2,642	91.08
	교통및물류	62,053	67,672	△5,619	△8.30
	국토및지역개발	49,201	68,382	△19,181	△28.05
	예비비	8,429	20,128	△11,699	△58.12
	기타	113,392	104,364	9,028	8.65
특별회계	계	788	1,400	△612	△43.71
	사회복지	634	598	36	6.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8	0	58	순증
	국토및지역개발	20	266	△246	△92.59
	기타	77	536	△459	△85.65

■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72,788	880,000	△7,211	△0.82
일 반 회 계	계	872,000	878,600	△6,600	△0.75
	인 건 비	103,327	99,240	4,087	4.12
	물 건 비	40,958	39,830	1,128	2.83
	일 반 운 영 비	33,165	30,507	2,658	8.71
	여 비	2,538	2,459	78	3.18
	업 무 추 진 비	718	739	△21	△2.88
	직무 수행 경비	662	646	16	2.51
	의 회 비	746	714	32	4.52
	재 료 비	2,159	2,887	△727	△25.19
	연 구 개 발 비	971	1,879	△908	△48.34
	경 상 이 전	556,966	520,157	36,809	7.08
	자 본 지 출	159,051	197,263	△38,212	△19.37
	시설비및부대비	137,560	172,446	△34,886	△20.23
	민간 자본 이전	12,989	11,328	1,660	14.6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66	3,992	75	1.8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565	1,635	△1,070	△65.42
	자 산 취 득 비	3,871	7,862	△3,991	△50.76
	보 전 재 원	1,150	0	1,150	순증
	내 부 거 래	2,037	1,976	61	3.07
예비비 및 기타	8,511	20,133	△11,622	△57.73	
특 별 회 계	계	788	1,400	△612	△43.71
	물 건 비	20	41	△21	△51.00
	경 상 이 전	614	578	36	6.21
	자 본 지 출	77	90	△13	△14.11
	예비비 및 기타	77	398	△321	△80.69

7.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8,800억원 보다 72억원(0.82%)이 감액된
8,728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8,786억원 보다
66억원(0.75%)이 감액된 8,72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14억원 보다 6억원이 감액된 8억원입니다.

■ 세입예산

□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에 있어

- 지방세 2,207억 9천만원,
세외수입 407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1,495억원,
조정교부금등 300억원,
보조금 4,144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5억 5천만원 등
총 8,7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전년대비 5억 5천만원 증가한 129억 4천만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35억 2천만원 감소한 633억 5천만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5억 8천만원 증가한 385억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1억 6천만원 증가한 169억 8천만원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169억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39억 3천만원 증가한 683억 5천만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대비 7억 7천만원 증가한 37억 7천만원 등
총 24억 7천만원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2,207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8억 9천만원 증가한 407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5억 7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8억 3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0억 7천만원 감소한 1,49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 조정교부금등은 10억 1천만원 감소한 3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175억 1천만원 늘어난 2,908억 3천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은 204억 2천만원 감소한 1,235억 7천만원으로
총 4,1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6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능별 분류에서는

- 일반공공행정분야	457억 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7억 원
- 교육분야	137억 원
- 문화 및 관광분야	438억 원
- 환경분야	275억 원
- 사회복지분야	4,135억 원
- 보건분야	275억 원
- 농림해양 수산분야	550억 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55억 원
- 교통 및 물류분야	621억 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92억 원
- 예비비·기타	1,21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 성질별 분류에서는

인건비는 보수 639억 4천만원, 기타직보수 48억 7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5억 7천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79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4.12% 증가한 1,03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331억 6천만원, 여비 25억 4천만원,
업무추진비 7억 2천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 6천만원,
의회비 7억 5천만원, 재료비 21억 6천만원,
연구개발비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2.83% 증가한 40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368억 1천만원이 늘어난
5,569억 7천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382억 1천만원이 감소한
1,59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1억 5천만원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 20억 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읍·면 예산의 경우

읍·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화원읍은 400만원, 논공읍은 360만원, 다사읍은 읍장 900만원,
과장 240만원, 유가·옥포·현풍읍은 각 360만원이며,
가창·하빈면은 각 240만원, 구지면은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읍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4억 5천만원,

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청사관리 등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화원 60억원, 논공 47억원, 다사 68억원,

유가 45억원, 옥포 45억원, 현풍 40억원, 가창 33억원,

하빈 27억원, 구지 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2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6억 1천만원이 감소된
7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천만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24년도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및 국제정세 불안 등 세계경제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 우리군의 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1.89%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52.47%입니다.

■ 재정자립도 : 31.89%				
구분	세입 총규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액	872,000	220,793 (25.32%)	40,759 (4.67%)	16,552 (1.90%)

※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산규모}×100%

■ 재정자주도 : 52.47%						
구분	세입 총규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액	872,000	220,793 (25.32%)	40,759 (4.67%)	149,500 (17.14%)	30,000 (3.44%)	16,552 (1.90%)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등내부거래+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예산규모}×100%

-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국세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시비 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국고 보조금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 고환율,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어 에너지·곡물 가격의 변동에 따른 물가의 안정이 불확실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세출수요 증대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수요의 확대에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47.42%로 가장 비중이 많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이 7.12%이고, 농림해양수산업이 6.31%, 국토 및 지역개발이 5.64%, 일반공공행정이 5.25%, 문화 및 관광이 5.02% 순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258억원(6.65%)이 증액되어 4,135억원으로 2021년 비중이 39.49%, 2022년 41.96%, 2023년 44.21%로 매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개발 10억 원
CCTV 구축(노후교체, 신규) 9.5억 원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77.5억 - 화원31(1개소), 논공46.5(3개소)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증축 16.2억 원
여성문화복지센터 개선 8.45억 원(수영장7.3, 음향1.15)

달성국민체육센터 개보수 8.6억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23.9억 원
 다사 매곡 테니스장 정비 13.6억 원
 다사 고속도로 하부 주민편익사업 13억 원
 하빈면민 운동장 시설개선 18억 원
 대구교도소 유희부지 산책로 조성 8억 원
 본리미리내 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15억 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25억 원(죽곡8, 북리6, 명곡6, 금포5)
 현풍 상리근린공원 조성 45억 원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 29억 원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부지매입 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보조를 맞춰, 건전재정을 기조로 책 임·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에 초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한 이번 2024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 보조사업 등 행사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적 지출 요인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은 사업초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성 실히 이행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향후 운영에 대한 검토를 면밀 히 하여 예산 투자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의안번호: 제2397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함.

5. 기금의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18	(재정안정화계정)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 법」 제1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통합계정) 동일 회계연도 내 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 금법」 제1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기획예산실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 접 수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 리·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률」 제11조	자치행정과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대구광역 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위생과	
자활기금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대 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활용을 위하여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 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18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 고 쾌적한 환경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조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 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기금	1999	군민들의 체력 증진 및 지역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 례 제10조	체육진흥과	

6. 기금의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예치금 회수	이 자	기 타
계	234,368,806	2,036,700	25,000	223,670,314	8,533,792	103,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12,880,693	0	0	205,009,193	7,871,5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73,218	0	0	2,960,558	112,660	0
고향사랑기금	122,400	0	0	71,400	1,000	50,000
식품진흥기금	159,997	0	25,000	100,997	6,000	28,000
자활기금	975,460	0	0	924,090	26,370	25,000
재난관리기금	16,158,157	2,036,700	0	13,637,227	484,23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97,830	0	0	191,421	6,409	0
체육진흥기금	801,051	0	0	775,428	25,623	0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234,368,806	1,074,500	70,000	540	233,194,566	29,2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12,880,693	0	0	0	212,880,69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73,218	0	0	0	3,073,218	0
고향사랑기금	122,400	0	0	0	122,400	0
식품진흥기금	159,997	56,500	0	540	73,757	29,200
자활기금	975,460	10,000	70,000	0	895,460	0
재난관리기금	16,158,157	990,000	0	0	15,168,1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197,830	8,000	0	0	189,830	0
체육진흥기금	801,051	10,000	0	0	791,051	0

7.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합 계	223,617,714	10,751,092	1,174,240	233,194,566	9,576,85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5,009,193	7,871,500	0	212,880,693	7,871,5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960,558	112,660	0	3,073,218	112,660
고향사랑기금	71,400	51,000	0	122,400	51,000
식품진흥기금	100,997	59,000	86,240	73,757	△27,240
자활기금	871,490	103,970	80,000	895,460	23,970
재난관리기금	13,637,227	2,520,930	990,000	15,168,157	1,530,930
옥외광고발전기금	191,421	6,409	8,000	189,830	△1,591
체육진흥기금	775,428	25,623	10,000	791,051	15,623

8. 기금별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지원대상

- 세입감소 또는 심각한 경제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 2024년 주요사업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12,880,693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	202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대구은행	203,494,519	205,009,193	212,880,693	7,871,5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지원대상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2024년 주요사업

- 통합계정 예치금 3,073,218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	202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대구은행	6,189,501	2,960,558	3,073,218	112,660	

□ 고향사랑기금

○ 지원대상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2024년 주요사업

-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122,4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	202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농협은행	0	71,400	122,400	51,000	

□ 식품진흥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식품위생업자 및 관련 단체
-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 2024년 주요사업

- 위생등급제 외식상권 활성화 지원 10,000천원
-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상수도요금 등) 20,000천원
- 배달음식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용 지원 (40개소) 2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	202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합 계		116,796	100,997	73,757	△27,240	
예치금	대구은행	90,000	90,000	70,000	△20,000	정기예금
	대구은행	26,796	10,997	3,757	△7,240	보통예금

□ 자활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 2024년 주요사업

- 점포 전세금 대여 70,000천원
-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및 소양직무 교육 1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a)	2024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예치금	대구은행	872,140	871,490	895,460	23,970	

□ 재난관리기금

○ 지원대상

- 재난예방사업 및 긴급복구(달성군 전지역)

○ 2024년 주요사업

- 재해예방 및 복구 물품 구입(감염병 등) 30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염화칼슘 등) 20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비 450,000천원
- 제설장비 구입 4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a)	2024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예치금	대구은행	12,443,948	13,637,227	15,168,157	1,530,930	

□ 옥외광고발전기금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2024년 주요사업

- 현수막 게시대 관리 6,000천원
- 지정 벽보판 관리 1,000천원
- 광고물 철거비 1,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	202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대구은행	207,674	191,421	189,830	△1,591	

□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

-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및 격려
- 유소년·청소년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 및 지원
- 기타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 2024년 주요사업

- 지역 체육진흥 사업 5,000천원
-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및 입상자 격려사업 5,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	2024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대구은행	783,140	775,428	791,051	15,623	

9. 종합검토의견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 2024년 우리군의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투명하고 명확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